

#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7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7. 23.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7. 23.

(제12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)

## 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문화관광과장 안 영 순

나. 제안사유

- 도곡온천 관광지내 사유토지 매입하여 공원, 위탁시설, 체험공간, 불거리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곡온천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취득계획 대상토지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구분	토지소재지		지번	지목	취득면적	재산가액 (공시지가)	용 도	비고
	읍면	리						
취득	도곡	천암	645-2외 55필지	임야	116,348.0	2,294,526 (145,670)	유 회 시설지구	

○ 취득사유

-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기반조성으로 민자유치 촉진
- 놀이시설, 공원, 체험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
- 각종 경영수익사업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

○ 관계법령 및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
**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 용 태)**

- 본 안건은 도곡온천 유희시설지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곡면 천암리 지내의 토지 총 56필지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법령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**4. 질의 답변 요지**

“생략”

**5. 토론요지**

“생략”

**6. 심사결과**

“원안의결”

**7. 첨부 :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**